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5538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5538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9. 21 선고 99나363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AAAA사사무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A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CA보증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CBCB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B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9. 21. 선고 99나36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아래에서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파기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30.부터 2000. 9. 2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상하고 수수한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23587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KK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 사이의 감리용역계약 체결(당시 감리비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감리비예치보증계약 체결(피고는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1995. 10. 4.부터 1997. 12. 30.까지로 되어 있다)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비예치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감리비 금 15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97. 10. 6.자로 청구한 감리비 금 76,450,000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가 1997. 12. 6.자로 청구한

감리비 잔금 76,450,000원에 대하여는, 감리비 잔금은 사용검사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되 감리용역계약기간 내에 사용검사가 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리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감리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으므로 잔금 채무의 이행기는 감리계약기간 만료일인 1997. 12. 30.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의 1997. 12. 6.자 감리비 청구에 대하여 같은 달 29. 액면 금 76,450,000원, 지급기일 1998. 3. 25., 지급장소 KL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행기 전에 그 이행기를 지급기일인 1998. 3. 25.로 변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채무는 감리비에치보증약관에서 피고가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피고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감리비에치보증계약의 보증금이 감리비를 현금에 갈음하여 보증서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보증범위는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고, 보증금의 위와 같은 성격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기가 보증기간 이후에 도래하는 감리비지급채무까지 보증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이미 확정된 감리비지급채무일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상의 이행기일은 변경된 이행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감리용역계약의 체결과 감리비 지급약정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99. 6. 29. 건설교통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7 제3항이 공사감리비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달 10.까지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정한 감리비 잔금의 이행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소외 회사의 감리비 잔금 채무의 이행기가 피고의 보증기간 이후로 변경되어 피고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감리용역계약의 성질과 감리비의 지급 및 어음관계와 어음의 원인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반거래관행에 반하여 불합리한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보증금액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인용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199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1998.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인용한 보증금에 대하여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에는 위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이 인용한 감리비 보증금 7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피고가 보증금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